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71 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:김종양・서천호・박성훈

이종욱 • 고동진 • 나경원

조승환 · 최수진 · 김희정

정연욱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감사원, 권익위에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등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, 현행법을 개선·보완하여 지 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(안 제 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.
- 나.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60조의2 신설).

- 다. 성폭력범죄 등 성비위에 관한 범죄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(안 제63조의6제5항).
- 라.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·종료 통보 대상 사건에 성관련 비위행위 및 음주운전 사건을 추가함(안 제80조의2).

법률 제 호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1항제3호 중 "사람"을 "사람(이 경우 "공무원"은 "공사의 임직원"으로 본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"을 "제58조제4항·제5항, 제63조의7제3항 또는 제78조의2제3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(제3호는 제외한다) 및"을 "제1항 각 호(제3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 또는"으로, "그"를 "제1항 각 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그"를 "제1항제3호"로 한다.

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0조의2(벌금형의 분리 선고) 「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임직원에게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(競合犯)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.

제63조의6제5항 중 "3년(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의 경우에는 5년)이"를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10년

- 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 지행위
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
- 다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라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- 2.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 · 유용의 경우: 5년
- 3.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: 3년

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"을 "경찰·검찰 등 수사기관, 감사원,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직무와 관련된 사건
- 2.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
 - 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 지행위
 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
- 3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

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)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공사·공단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징계 요구 등에 대한 적용례) 제6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(제76 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4조(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·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80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5조(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이후 공사·공 단의 임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 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0조(임직원의 결격사유 등) ①	제60조(임직원의 결격사유 등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	
될 수 없으며, 제3호에 해당하	
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	
수 없다.	.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	3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<u>사람</u>	사람(이 경우 "공무원"은 "공
	사의 임직원"으로 본다)
4.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	4. 제58조제4항・제5항, 제63조
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	의7제3항 또는 제78조의2제3
아니한 사람	<u>항</u>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	② <u>제1항 각 호</u>
의 어느 하나에(제3호는 제외	(제3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
한다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	나 또는
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	
임명 당시 <u>그</u> 에 해당하였음이	<u>제1항 각 호</u>
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	
직한다.	
③ 공사의 직원이 「지방공무	③

원법」 제61조제1호에 해당하 게 되거나 임용 당시 <u>그</u>에 해 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④·⑤ (생 략) <신 설>

제63조의6(징계 요구 등) ① ~ 저 ④ (생 략)

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
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<u>3년</u>
 (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의 경우에는 5년)이
 지나면 하지 못한다.

<신 설>

	제1항제3호
	④·⑤ (현행과 같음)
1	60조의2(벌금형의 분리 선고)
	「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
	공사의 임직원에게 「지방공무
	원법」 제31조제6호의2 또는
	제6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
	죄의 경합범(競合犯)에 대하여
	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
	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
	<u>다.</u>
1	63조의6(징계 요구 등) ① ~
	④ (현행과 같음)
	⑤
	<u>다</u>
	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
	<u>o</u>]
	1. 징계 등 사유가 다음 각 목
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	<u>우: 10년</u>
	가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

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<신 설>

<신 설>

제80조의2(수사기관 등의 수사 제80조의2(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・종료 통보) 다음 각 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 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 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 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- 1. 감사원
- 2. 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

에 따른 금지행위

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다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 · 청소년대 상 성범죄

라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 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
- 2. 금품 및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・유용의 경우: 5년
- 3.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: 3년

등 개시・종료 통보) 경찰・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할 등 수사기관, 감사원, 행정 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---

- 1. 직무와 관련된 사건
- 2.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

<u>기관</u>

- 3. 행정안전부장관
- 4. 지방자치단체의 장

위와 관련된 사건

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

 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

 따른 성폭력범죄

3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 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